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의2서식] <개정 2020. 9. 29.>

차액계약 체결 인가(변경인가)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
신청인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상 호	전화번호
	소재지	

계약 대상	전기사업자 구분 : 발전사업자 / 판매사업자 / 직접구매자 / 구역전기사업자
	대상설비(발전사업소명)
	계약기간

「전기사업법」 제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차액계약에 대한 인가(변경인가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차액계약서(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것에 한정합니다)의 사본 2.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서류 등 차액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및 제출	→ 접 수	→ 검토	→ 전기위원회 심의	→ 인가 및 변경인가
신청인	산업통상자원부	산업통상자원부	전기위원회	산업통상자원부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